핀테크 규제개선과 시사점

요 약

금융당국은 핀테크·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진행 중이지만, 산업에서는 더 많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해외 사업모델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작업을 시작하였음

금융당국은 핀테크에 적합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금융규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한 보험과 P2P 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며,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함

1. 금융당국의 핀테크 규제개선 노력

- (규제개선과 한계)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한계점이 드러남
  - (금융혁신 지원) 2017년 3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 이후 「지정대리인」 제도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지원함
    -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68건 중, 보험분야는 "ON-OFF 방식 해외여행자보험", "레저보험 간편가입" 및 "리워드형 펫보험 플랫폼" 등으로 지정 건수가 적음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시행 중임
    - 건강관리기기 지원이 보험업법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어 상품개발에 한계가 드러남
    - 2019년 11월 1일, 건강관리기기 제공을 최대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이 예고됨
  - (클라우드) 2018년 7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과 2019년 1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행으로,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중요정보"는 해외서버에서 처리할 수 없어 외국계 보험회사들은 여전히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 (핀테크 투자) 보험회사의 핀테크 업체 투자 확대를 위해 2019년 7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과 10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데이터 3법)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개선과 달리, 입법이 필요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은 국회 일정이 지연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임
    - 신용정보법 개정 후 추진 계획인 시행령 개정(예: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사용 확대)도 지연됨

- (맞춤형 규제혁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15일「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TF)」첫 회의를 개최하고,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함
  -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글로벌 기업의 사업모델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보험 사업모델은 Friendsurance(P2P 보험)와 Lemonade(간편 가입/보험금 청구)가 선정됨
  - 규제개선 방안 검토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실무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2. 시사점

- 핀테크에 적합한 규제환경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새로운 체계의 금융규제가 필요함
  - 기존 금융규제를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금융산업을 재편하는 핀테크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금융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분적인 규제개선만으로는 보험회사나 스타트업들의 시장성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려움
  - 감독 방향을 산업 친화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할 것임

- "맞춤형 규제혁신"의 보험 모델로 Friendsurance(P2P 보험)와 Lemonade(간편 가입 및 간편 청구)가 선정된 것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추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해석됨
  - Friendsurance와 Lemonade는 대표적인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서비스로, 소비자들의 편익에 더욱 집중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보험시장에 변화를 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줌

- 보험회사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충분히 지원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보험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할 것임
  -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 보험회사는 가명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여 데이터 사용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양한 상품개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임
  - 또한, P2P 보험이 도입되면, 틈새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임
  -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은 보험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김규동 연구위원
gyudong.kim@kiri.or.kr